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 마련 등(안 제13조, 제80조의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추천 시 단체의 “복수” 추천을 명시함.

나.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안 별표 2의3)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연임할 수 있다.”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인임”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임”으로 한다.

제80조의3제2항제1호 중 “각각”을 “각각 복수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러목을 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 및 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별표 2의3 제2호코목을 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코목부터 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공제회

머.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공제자에
관한 자료

토.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에 관한 자료

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종아동등에 대한 자료 및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가출인에 대한 자료

호. 해양경찰청의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6조에 따라 확인된 변
사자 신원 내용 등에 따른 실종(변사)에 관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의 임기 등) 국민연금심의위원 회의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 다.</u>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의 임기 등) ----- -----, <u>두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u>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 ~ ③ (생략)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 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 ----- ----- ----- ----- -----.
1.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u>농업인임</u> 을 확 인할 수 있는 자	1. ----- ----- <u>1천제곱미터 이 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하는 농업인임</u> -----
1의2. ~ 4. (생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 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 호의 위원은 상근(常勤)인 위원 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 의 위원이 된다.	② ----- -----. ----- ----- -----.
1.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 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 사했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 가"라 한다)으로서 법 제103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u>각각</u> 추 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용위원 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1. ----- ----- ----- ----- ----- ----- <u>각각 복수</u> <u>로</u> ----- ----- --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u>한다</u> .	④ ----- ----- <u>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u> <u>수 있다</u> .
⑤ ⑥ (생 략)	⑤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639